

오보와 표현의 오기(중)

-신문평의회 사례 -

I. 요약에 의한 부정확

1. 스트라이크 기사의 오보

운수일반노동조합은 데일리·익스프레스 지에 게재된, 런던의 독크(Dock)가 조업을 중지했다는 기사는 말도 안 되는 오보로 용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관계자들간에 반감이 높아 가고 있다고 제소했다. 조합측은 「기사 속에 있는 하역계라는 것은 틀린 것이며 바른 독크로 부터 지원을 구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사실에 반한다. 또 분쟁의 원인이 된 조합원의 조합비 납입은 지연되고 있으나 이 사람들에게 대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시킨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익스프레스 지의 편집장 로버트·에드워드 씨는 당초의 원고를 요약했기 때문에 하역계에 관해 부정확하게 되었다고 조합측에 설명했다. 담당기자는 두 사람의 조합원으로 부터 분쟁해결이 잘 되지 않으면 다른 독크에 지원을 구하기로 했다는 말을 확실히 들었으며 조합비납입이 많이 늦은 두 사람은 자동적으로 제명되었다는 정보를 의심할 이유도 없었다고 평의회에서 진술했다.

평의회는 기사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 조합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966년)

2. 전문가의 의견은 정확하게

에딘버러 대학 이학부 교수 두 사람이 「선」지에 게재된 기사가 줄거리는 정확하지만 인용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편집장 R·L·딘즈딜 씨는 교수의 이야기를 취재한 기자가 기사를 짤막하게 읽기 쉽게 하기위해 별개의 두 발언을 한 문장으로 묶은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학부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을 때 정정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의회는 기사의 줄거리는 정확하지만 전문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인용하도록 한층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67년)

II. 태만에 의한 불정확

1. 시서안에 스파이가 있다.

에섹스·위크리·뉴스 지는 『시청에 스파이가 있는가』라는 제하에 어떤 부인이 브랜드올 준자치도시의 시청에 나가 혈값으로 나와있는 토지에 건축허가가 나오는지의

여부를 문의했는데 그로부터 한시간도 채 되지않아 땅 주인한테 가보았더니 건축청부업자가 더 비싼 값으로 이미 사버렸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부인은 이 거래에 관해 다른 사람이 알리가 없으므로 「아무리 생각해도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청부업자에게 알린 것 같다: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므로 조사해야만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기사에는 부인의 희망에 따라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신문사측의 의견으로 「이 주장이 절대적으로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조사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사화 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시청직원의 성의를 의심하는 의도가 있다고 이의가 제기되었다. 시참사회서기는 이러한 추상적인 기사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편집장 E. L. 웨어링 씨는 당사자인 부인이 너무나 친지하게 말을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개할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 문제를 공개하여 조사하도록 한 것은 올바른 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의회는 손해를 본 사람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억측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한 기사는 신문의 입장에서 공표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뒷받침이 될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수할 수도 없다고 판정했다. (1963 년)

2. 교도소로 부터 가짜 편지

웬우드 · 스크라브즈 교도소의 죄수로, 교도소가 발행하는 잡지의 편집장으로 있던 X 씨는 데일리 · 스켓치 지의 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 기사는 죄수에게 지나친 자유를 주고 있다고 교도소 당국을 공격하는 내용이었다. 기사의 첫 머리에는 「웬우드 · 스크라브즈 교도소의 이름이 박힌 편지지를 사용한 불온한 편지가 어제 본사에 배달되었다. 필자는 5 인의 교도관들로 교도소내의 상해에 관해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으며 또 고민하고 있었다.」고 씌어져 있었다. 여기에 X 씨의 이름이 나오면서 「교도관의 말에 의하면 이 남자는 자주 조지 · 브레이크의 방에 가서 차를 마신다. 이 조출한 차모임에는 한 사람의 단짝이 있는데 그는 사기, 위증, 위조범으로 복역중인 Y 라는 남자」라는 내용이 씌어져 있었다.

기사에 의하면 「이 패거리들은 머리는 좋으나 절조가 없고, 스파이 혐의로 42 년형 받고 있는 조지 · 브레이크가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다른 동료 죄수들에게 퍼뜨리고 다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지 · 브레이크 자신도 종교를 공격한 논문을 잡지에 기고하고 있다」고 피어 있다.

X 씨는 기사에 게재된 모든 내용이 거짓이라고 제소했다. 그는 「브레이크의 죄에 대한 오명을 씻으려는 운동을 한 일도 없으며 브레이크의 방에서 차를 마신 일도 없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방안에 그와 한둘이 있는 일도 없다. 데일리 · 스켓치의 기사를 비판한 잡지의 사설은 자기 혼자 써서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은 것이다. 조지 · 브레이크가 쓴 것으로 되어있는 논문은 휴머니스트 · 그룹을 자칭 하는 사람들이 쓴 것으로 필자명도 그렇게 씌어져 있다.」라고 주장했다.

데일리·스캐치의 편집장 로버트·존스톤 씨는 기사의 근거가 된 편지를 평의회에 제출했다 편지는 서명도 날짜도 없이 윌우드·스크라브즈 교도소의 주소가 인쇄된 편지지에 타자로 적혀있었고 전화번호는 지워져 있었다. 필자는 교도관으로 되어 있었으며 교도소의 잡지에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져 이것이 좋지 않은 목적에 이용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었다. 그리고 「불만을 가진 다섯 사람의 교도관」이란 싸인이 있었다.

데일리·스캐치 지의 편집장 존스톤 씨는 편지와 함께 배달되어 온 교도소의 잡지도 제출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스파이 행위의 도덕성』이라는 논설이 있었다. 별호에는 열차 강도가 졌다는 투서가 났었는데 이 논설과, 다른 죄수가 이 논설을 추켜올린 기사를 함께 비판하는 내용이다. 또 『불량배와 바보』라는 제목의 조지·브레이크 집필의 종교를 공격하는 논문도 실렸다.

조사결과 『불량배와 바보』라는 조지·브레이크 집필의 논문이 실린 배달해 온 잡지와 같은호의 정판에 휴머니스트·그룹의 기사가 있음이 밝혀진 한계에서 평의회는 이 사건을 내무부에 보고했다. 그 후 내무부가 평의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데일리·스캐치 지에 배달된 잡지는 위조품으로 조지·브레이크 집필의 기사가 게재된 책은 배달돼 온 책 한 권 뿐이었다. 위조의 범인이 누구이며 어떠한 경로로 교도소 밖으로 나왔는지 분명하게 밝혀낼 수 없었다.

X씨의 주장은, 신문기사의 앞머리를 읽어보면 편집자에게는 다섯 사람의 교도관이 서명한 것이 있는 것같이 생각되고 또 진짜 서명이 있음에 틀림없다고 믿고 있었다. X씨 자신은 전국지가 저지른 허위이며 악질적이며 그리고 전혀 근거가 없는 공격의 희생자로서 이는 증거에 의해 전적으로 사기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편집장 존스톤 씨는 신문사는 편지가 진짜라고 믿고 교도관에게도 확인했다고 평의회에 답변했다. 그는 그 후의 구두증언에서는 조사가 시작되었을 만큼 정보에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기자는 기사가 나간 다음에 그 전지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조사했다고 말하고 필자의 이름은 몰랐으나 편지는 진짜인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편지의 출처에 관해 몇 번이나 조사했지만 누구와 만났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평의회는 신문사에게 기사 게재전에 조사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편집장 존스톤 씨는 가짜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교도소의 감시법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명백하다는 의견을 진술했다. 그는 또 「편지가 교도소의 공용지에 쓰여졌고 잡지의 증거까지 있고 보면 불평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않을 수 없다. 기사를 읽은 독자가 반드시 신문사에는 다섯 사람의 교도관 이름이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내리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지금에 와서 안 일이지만 게재 전에 기사의 출처에 관해 조사한 일은 없었다」는 사실을 진술했다.

평의회가 조사한 바로는 편지지에서 지워버린 전화번호는 간호원 숙소의 것으로 교도소는 이 번호를 7년 전 부터 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편집장 존스톤 씨는 만일 그 점에 대해 눈치를 했거나 번호를 지워버린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더라면 그곳을 지우고 새로운 번호를 써넣지 않은 사실을 중시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평의회는 이 기사를 읽은 사람은 워우드 · 스크라브즈 교도소의 상장에 불만을 갖고 있는 다섯 사람의 교도관이 실제로 존재하고 신문사에서는 그 이름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실은 편지에는 이름이 적혀있지 않았고 신문은 공표전에 그 편지가 진짜인지 아닌지, 또 그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 이러한 무책임한 일을 저지른데 대해 슬픔을 금할 길 없다는 평정을 내렸다. (1967 년)

III.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제목

1. 식중독의 위험

식중독 사고가 한창 번지고 있을 때 데일리 · 익스프레스 지는 농촌위생 담당관이 여러 가지 식품을 열거하면서 식중독에 주의하도록 경고하는 기사를 실었는데 『크림빵에 주의, 의사는 중독을 경고』라는 제하로 기사 서두에는 「크림방은 가급적 사지 않도록 의사인 위생 담당관이 주부들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썼다.

전국 빵 제조업 협회의 지부에서는 여섯 가지식품이 평등하게 진열되었는데 그중 하나만을 집어내서 취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신문기사가 나간 다음 날 크림 빵의 매출은 급속히 떨어졌다. 이러한 이의에 대해 익스프레스 지의 편집장 로저 우드 씨는 위생 담당관이 여섯 가지 식품 전부가 위험하나 크림 빵과 과자 빵류가 특히 위험하다고 기자들에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의회는 위험한 식품가운데 유독 하나만을 부당하게 제독에 강조한 것은 형평에어긋난다고 평정했다. (1963 년)

2. 아기가 제초제 마시고 사망

스코티쉬 · 데일리 · 익스프레스 지에 실린 아기의 사망기사에 『갓난아기 '주스의' 병으로 사망』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실은 이 아기가 오렌지주스의 병을 갖고 놀다가 죽었는데 그 병 속에는 제초제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청량 음료 제조업자 협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제목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편집장 영 · 매콜 씨는 '주스의 병'이란 단어를 ' '표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 표현이 보통 때 쓰는 주스병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평의회는 제목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틀림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아이는 주스병에 든 제초제를 마시고 죽은 것이며 주스는 하등 관계가 없었다. (1962 년)

3. 공동시장에 대한 연설

캐나다 주재의 영국고등변무관 에모리 자작은 「영국이 공동시장에 가입하느냐 안하느냐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무역방식에 대해 경제상, 상업상 대규모적인 재조정을 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들 영국인은 무엇인가 극히 고통스러운 변화에 직면하려 하고 있다. -

일부산업은 전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연설했다는 기사가 데일리·익스프레스 지에 실렸다. 제목은 『공동시장은 고통을 초래한다. 에모리 경답』으로 되어 있었다. 에모리 경은 공동시장이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한 뜻이 아니므로 이러한 제목을 붙인 것은 고의로 오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익스프레스 편집장 로저·우드 씨는 제목의 표현이 틀렸다거나 기사가 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공동시장의 유리한 점도 연설속에 있었으나 그 대부분은 지금까지 몇 번이고 되풀이된 것으로 에모리 경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불리한 점을 솔직하게 밝힌 것은 드문 일이며 이것이 연설내용가운데서 가장 좋은 뉴스였다고 주장했다.

평의회는 연설문의 전문을 검토한 결과 이는 영국의 공동시장가입에 찬성한 것이므로 제목은 오해를 갖게끔 되었다고 평정했다. (1962년)

4. 축구선수의 검시

프로 축구 선수 A·B가 자동차를 운전 중 허스와 충돌하여 부상당한 뒤 사망했기 때문에 검시를 하게 되었는데 이스텔 이브넘·뉴스 지는 『A·B는 술을 마셨다고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는 혈액 중 알코올 농도는 부당하게 높지는 않았다는 의사의 증언이 있었고 부상은 즉사할 만큼 치명적이었다는 내용이 실렸다. 한달 뒤 연기되었던 심리가 재개되어 검사관은 사고사라는 판정을 내렸다.

첫번째 심리가 끝난 뒤, 여섯 사람의 독자는 의사가 A·B는 술에 취해 있지는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목을 붙인 것은 지나치다고 항의하는 편지를 공동서명하여 신문에 냈다.

편집장 M·빌즈 씨는 이 제목을 그와 같이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으며 보통 이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1면의 눈에 잘 띄이는 장소에 해명 기사를 냈다고 밝히고 심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평의회는 기사의 제목이 전적으로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즉각 정정 기사를 내긴 했으나 사과까지 곁들여야 한다고 평정했다. (1967년)

IV. 조작된 사진

나이로비 근교의 도난

케냐정부는 위크엔드 지에 실린 나이로비 근교의 도로상에서 있는 강도살인의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케냐정부 당국은 신문보도가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일조차 없으며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검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사진을 촬영했다는 사람의 케냐 입국기록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케냐정부는 이 기사에 대해 「신문리상 일찍이 없었던 가장 흉칙한 조작」이라고 평했다.

위크엔드의 편집장 데이비드 홀씨는 이 사진은 유명한 독일의 한 잡지사의 런던 주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며 잡지사 측이 진짜라고 보증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의 잡지사 주간은 촬영자가 필름을 보내왔으므로 위조일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평의회는 촬영자의 구술서를 청구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

평의회는 그 사진이 진짜이며 기사도 진실이라고 믿기에 충분한 증거가 평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크엔드 지에 자료를 제공한 곳이 유명한 회사라는 것은 인정하나 제반 상황이 이상하므로 편집장이 성의를 갖고 했다 하더라도 사진을 공표하기 전에 특별히 조사하여 확인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966 년)

V. 인용부호의 오용

교수의 말을 부정확하게 인용

한 교수가 미숙아 가운데는 보육기숙의 산소공급량이 과다하여 눈이 별게 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자 이를 레이놀즈 뉴스가 보도했는데 그 기사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다. 기사는 1 인칭으로 인용되었는데 교수는 그러한 말을 한 일이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이 되어 의사로서 조소 ·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이의제기의 이유이다. 비서는 회견을 하지 않는다는 뜻을 신문에 전했는데 그 후 기자가 안과학회를 통해 4 개 항목의 질문을 냈기 때문에 문서로 답변했다는 것이다. 이 문서를 건네주기 위해 학회가 기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미 기사를 써버렸다는 대답이었다. 회답 내용이 기사화되지는 않았으나 교수는 1 인칭으로 인용된 부분을 별도로 한다면 기사내용 자체는 정확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기자는, 학회가 교수의 말을 1 인칭으로 인용하는 것을 동의했으며 원고도 양해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회는 이를 부인했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인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평의회는 교수가 신문기자와 만나지 알겠다고 분명히 말했고 이 경우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신문이 교수의 말을 사실에 반해 직접 인용함과 동시에 제목에서 교수가 외과의라고 한 것은 틀린 것이므로 교수의 요구대로 정정 기사를 내야만 할 것이라고 평정했다.(1962 년)